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구축〉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32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구축	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1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제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제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Ⅲ. 검토의견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구축

개정안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우·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단순 기상현상 관리체계에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이상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u> <u>1의3. “극한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u>

2. ~ 17. (생략)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제3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상을 말한다.

2. ~ 17. (현행과 같음)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

-----기상현상과 이상기후·극한기후에-----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

④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

현행법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해 관측·예측·제공·활용하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폭우·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단순 기상현상 관리체계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향후 심화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상기후와 같이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 또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¹⁾에 따른 극한기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하여야 한다.

1. ~ 2.(생략)

3. 이상기후, 극한기후(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현상에서 나타나는 영향

문 의 처
02)6788-5533